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0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01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의 월지급액 란 중 “월165,000원” 을 “175,000원” 으로 하고, “월155,000원” 을 “월165,000원” 으로 하며 “월145,000원” 을 “월155,000원”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